

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Jeong-Mi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gwon University, Chungcheongbuk-do, Korea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since the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 has been enlarged under Digital Economy and the implementation of Blockchain system to resolve the drawback of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The rule of current thin capitalization runs against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national treatment which deals fairly with goods, service and capital money within the country under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or.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are not available of current system to prove the debt which is not subject to the rule of thin capitalization. The unit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can apply to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domestic corporations, thereby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The availability of transaction level data through Blockchain platform to decide whether the debt can be subject to thin capitalization can resolve the issue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transaction which can't be found in current business transactions. This article should shed light on the proposing of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and Blockchain system to prevent the income shifting. This propose provid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on current system of thin capitalization and arm's length principles.

▶ **Key words:** Thin Capitalization, Arm's Length Price, Transfer Pricing, Blockchain, BEPS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과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 **주제어:** 과소자본세제제도, 정상가격, 이전가격제도, 블록체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 First Author: Jeong-Mi Lee, Corresponding Author: Jeong-Mi Lee
- Jeong-Mi Lee (jml@jwu.ac.k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gwon University
- Received: 2020. 07. 06, Revised: 2020. 09. 08, Accepted: 2020. 10. 06.

I. Introduction

과소자본세제도는 1995년 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었으며 1997년 1월 1일에 시행된 규정으로 기업이 자본대신 차입금을 과다하게 이용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걸 막기 위해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계상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1].

이러한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형식으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외국인투자법인(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순수내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외국법인)과 내국인(내국법인)의 국적에 의한 과세상 무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통상조약상 외국산물품이라도 일단 자국 내로 들어오면 자국산 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과소자본세제도는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과소자본세제 규정에서 '자본'의 애매한 범위와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를 위해 차입금의 크기 및 차입조건이 제3자와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를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3].

디지털 경제 하의 고정사업장의 범위 확대에 따라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는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득이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국외특수관계인들과의 사이에 적용되며 이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 적용범위보다 넓다 하겠다. 이는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상행위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 과소자본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소자본세제도를 다루고 있는 BEPS Action pla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 잠식 제한'을 토대로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의 고정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과 여러 국가들의 과소자본세제 개정 현안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과 블록체인을 검토한 후 V장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논의의 정리와 연구한계를 제시한다.

II.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Digital Economy

1. Digital Economy

디지털 경제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형성된 경제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환경이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환경과 그 외 경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업모델로는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지불시스템등 디지털 경제환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형의 재산 형태로 존재하고 이동되고 있기에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 가치가 창출된 국가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곳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문제로 OECD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2.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Digital Economy

이러한 디지털 경제하에서 종전의 과세체계 하의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방법은 당연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

다. OECD 및 UN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는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emtn, PE)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일정한 사업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변화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한계로 2017년 12월 OECD 모델조세조약이 개정되었다.

2017년 12월 OECD 모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조항과 관련한 주된 개정내용은 독립대리인 요건 강화, 종속대리인 요건 완화, 인위적 계약분할 및 고정사업장 예외 요건의 제한을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에 대한 방지 등이 있다⁴⁾.

종속대리인 요건의 완화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그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종속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특수 관계에 있는 하나 이상의 관계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독립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예외 요건의 제한은 사업장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했을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 예외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 간의 부분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해 예비적·보조적 활동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고정사업장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2017년 12월 OECD 모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조항은 대체적으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과소자본세제에 적용되는 차입금과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현행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의 범위가 외국법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기업에서 2017년 12월 OECD 모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조항에 의해 국외지배주주는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확대된다.

III. Thin Capitalization

1. Thin capitalization rule

과소자본세제는 1995년 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법 규정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법인(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대신 차입금을 활용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통한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취지는 자본금 대신 많은 차입금을 들여와 이자비용을 활용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내국법인의 차입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BEPS Action Plan 4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은 다국적 기업이 각 국에의 세법차이와 조세조약의 차이를 활용하여 가치창출 활동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이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BEPS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OECD가 주도하여 2015년 6대 핵심영역과 핵심영역에 따른 15개 Action plans이 최종 승인되었다.

BEPS의 15가지 과제 중 Action 4(이자비용 및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는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세법 차이를 이용하는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되는 반면 자본에 대한 배당금은 공제되지 않기에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것이다.

BEPS Action 4의 이자비용 공제는 세무상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순이익(EBITDA)에 기업의 순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고정비율규정을 기본으로 하는데, 개별 국가별로 정해진 기준 비율까지의 지급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BEPS Action 4에서 적용되는 이자비용의 형태는 부채의 모든 형태에 대한 이자, 이자성격의 경제적 비용, 자본조달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에 적용된다. 이자와 이자성격의 경제적 비용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또는 명목원금의 고정 또는 변동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Foreign controlling shareholders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의 주주. 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단히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별로 구분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국내사업장과 해외본점 간의 지급이자가 인정되며 본점과 지점 사이의 지급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본점뿐만 아니라 국외 지점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라는 말은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소자본세제 현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며 순수내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외국법인)과 내국인(내국법인)의 국적에 의한 과세상 무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통상조약상 외국산물품이라도 일단 자국 내로 들어오면 자국산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을 요구하는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과소자본세제제도는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과소자본세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과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서만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조약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4. Loans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이자나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가 해당되지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① ③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금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⑥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 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참여하는 외화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다.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으로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차입금 개념의 불명확함과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자와의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 거래와 유사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3].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가 이자와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라고 하면 현행 BEPS Action 4에 적용되는 이자비용의 형태가 부채의 모든 형태에 대한 이자, 이자성격의 경제적 비용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발생비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BEPS Action 4의 차입금의 범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과소자본세제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조건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제외하면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의 범위는 BEPS Action plan 4를 통해서 이자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가 명확해 짐을 알 수 있다.

IV. Arms' Length Principle and Blockchain

1. Arms' Length Principle

이전가격세제란 국가 간 사업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의 특수관계인을 통한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 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국가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개별 기업별 회계를 사용한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되어 왔다.

이전가격 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외특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국외특수 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 관계자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또 다른 요건으로는 국제거래이며, 이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와 사용, 용역의 수입, 금전 임차 및 이자의 수취, 기타 거래당사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말하며, 만일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될 수 있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의 거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기타 합

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즉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세제라 할 수 있으며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중 주주의 관계에 있는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적용되는 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상행위가 가능하기에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더 과소자본세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에 기초한 정상가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기업의 원칙에 기초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이론상 합리적이거나 현실에서는 정상가격의 범위가 있을 뿐 정상가격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가 간 세수 확보 문제를 남긴다[5].

독립기업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으며, 저세율국으로 소득의 인위적 이전을 촉진 또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개경쟁시장에서 동일학서나 유사한 거래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가 사이의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6][7].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 방법 등의 거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 방법의 기타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나 현실적으로 OECD나 우리 법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2. BlockChain

디지털 경제하에서 전통적 과세방법인 독립기업의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의문은, 특히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영역에서 장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스마트 계약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다국적기업의 거래단위

수준의 역외 거래정보의 공유를 통해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제 3자 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업의 정상가격에 대한 이슈를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1 Blockchain

블록체인은 공공 분산 장부로 새로운 거래가 형성될 때마다 이전의 모든 거래와 연결됨으로써 거래의 위변조가 불가하며 블록은 발생한 시간으로 배열되어 네트워크에 의해 저장된다. 블록체인은 공공 분산 장부이며 블록에 저장된 정보를 사전에 승인된 당사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읽고, 쓰며, 허가가 필요한 기업 내부 목적으로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 있으며 누구나 접속가능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거래 수행, 검증 및 승인을 수행하는 등 모든 작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이 있다. 폐쇄형 또는 공공형 블록체인 기반 거래방식에 대한 계약내용을 컴퓨터 시스템 언어로 코딩되어 사전에 정해진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스스로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스마트계약이라 하며 스마트계약은 산업전반에 거래규정 및 계약관련 사항을 코드화함으로써 큰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2.2 Implementation of Private Blockchain in Thin Capitalization

이전가격에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의문을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과소자본세제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3자와의 차입금 규모 및 차입조건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국외 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공유되어야 한다[9].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모든 작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블록체인보다 J.P. Morgan의 'Quorum'²⁾ 및 Hyperledger Fabric³⁾과 같이 Private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사전에 승인된 당사자들만 접속 권한을 주며 블록체인 기반 거래 규정을 Smart Contract에 코딩하여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동의된 규정에 의해 거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에서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며, 거래상대방인 참여자들은 사전에 규정된 스마트 계약에 의해 거래 정보가 공유되게 하는 것이다.

2) JP 모건은 이더리움 기반 Private 블록체인 시스템인 '쿼럼(Quorum)'을 통해 불특정 다수 거래자에게는 비공개적인 방법을 적용했으며 규제기관에게만 공개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9].

3) 하이퍼레저 페브릭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에 공유되면 안되는 정보의 경우 별도의 채널을 통해 사전에 지정된 멤버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밀 통신이 가능하다[11].

2.3 Application of Blockchain

블록체인은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들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모든 거래가 참여자의 장부에 분산되어 기록되기에 거래 기록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산업 전반에 신뢰를 필요로 하는 거래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정보의 유효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에 의해 금융 산업과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같은 공공분야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12].

V. Improvement of Thin Capitalization

1. Problem of Thin Capitalization

앞글에서 제시되었듯이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순수내국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외국법인)과 내국인(내국법인)의 국적에 의한 과세상 무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통상조약상 외국산물품이라도 일단 자국 내로 들어오면 자국산 물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배된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2017년 12월 OECD 모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조항은 대체적으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사업장 범위의 확대는 차입금 범위의 확대를 가져오며 차입금을 활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과소자본세제 규정에서 과소자본세제 적용되지 않는 차입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Improvement of Thin Capitalization by Private Blockchain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서 과소자본세제제도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적용

된다고 하면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즉 국외특수관계인들과 사이에 적용되는 세제이기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에 무차별 원칙 위배가 해소된다. 그러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부재로 이자비용을 계산하긴 쉽지 않다.

즉 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 존재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거래단위 수준(transaction level)의 역외 거래정보의 공유를 통해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고객, 경쟁자,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공유되는 거래 공유 비즈니스처리 소프트웨어로서 특히 데이터 완전성, 신속한 처리 및 공유, 프로그램 및 자동 통제처리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다[13].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인 제3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도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비교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비교가능한 거래정보 획득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모든 역외 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공유되어야 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 거래자에게 모두 공유되는 public 블록체인 방식 아니라 참여자별로 사전에 협의된 private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사전적으로 접근권한을 설정해 해 놓은 smart contract를 통해 거래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참여자 모두에게 상세한 수준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플랫폼을 설계하여 거래별 데이터를 생성하면, 참여자는 거래력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역외거래를 수행하면 각 국의 과세관청은 누적된 거래단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비교가능 거래가격에 대한 기준 및 정상가격 원칙에 적용되는 가격의 범위를 보다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비교가능 제 3자 가격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9].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통일법이 없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사용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 주로 이전가격이나 부채활용을 통한 이자비용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면을 볼 때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 구축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소득이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하는 과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VI. Conclusions

현 과소자본세제도는 조세조약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과소자본세제 적용되지 않는 차입금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거래정보가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 계도 적용된다.

과소자본세제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이자비용 계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금'의 규정 부재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위에 다국적 기업이 거래를 한다면 모든 거래 내역이 거래 참여자의 장부에 분산 기록되기에 거래정보가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공유된 거래는 새로운 거래가 형성되면 과거 모든 거래와 연결되기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아래 다국적기업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제3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거래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소자본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가격방법의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상가격방법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REFERENCES

- [1] Lee, Y., "International Taxation", Semyeong, p718, 2005.
- [2] Byun, S., "A Study on the Violation whether or not of the Non-discrimination in Thin Capitalization Rules", University of Seoul, p76-85, 2007.
- [3] Jun, B. and Choi, B., "Research on Tax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p17-22, 2010.
- [4]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nal of BEPS Project", 2015.
- [5] Choi, Y., "A Study on Major Issues of Transfer Pricing Tax System Related to the BEPS Projec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2-3, 2017.
- [6] Park, M., "A Study on Transfer Pricing", Seoul Tax Law Review, p122-151, 2000.
- [7] Lee, C.,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ransfer Pricing", The Law Research Institute, p455-517, 2008.
- [8] Lee, C.H., "What is wrong with the OECD Approach to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Journal of IFA, Korea, Vol. 35. No.3(56) pp. 37-89, 2019.
- [9] Han, W.,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ransfer Pricing through Blockchain", Yonsei Law Review, pp247-273, 2019. DOI <http://dx.doi.org/10.21717/ylr.29.2.7>
- [10] Lee, J., "The Technology of Blockchain", Trend and Issues, 2017.
- [11] IBM, Summary of Blockchain Platform Technology, 2017.
- [12] Fanning, K., and D. P. Centers. "Blockchain and Its Coming Impact on Financial Services", Journal of Corporate Accounting & Finance, p53-57.
- [13] PWC 2016. "What's next for blockchain in 2016?". A Publication of PWC's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Retrieved from www.pwc.com/us/en/financial-services/publications/viewpoints/assets/pwc-qa-whats-next-for-blockchain.pdf

Authors



Jeong-Mi Lee received the M.S. degree in Taxation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and Ph.D. degree in Taxation from University of Seoul, Korea in 2002 and 2014,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Jungwon University, Choonbuk, Korea, in 2015.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Jung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tax avoidance, International taxation and Blockchain accounting system.